

# 탄 원 서

수 신 :

발 신 자 :

탄원 사항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-115호

(Quetiapine fumarate 경구제의 비급여 변경)

저는 파킨슨증으로 치료 중인 \_\_\_\_\_ 환자의 보호자입니다.

2009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여 그 동안 사용 중이었던 세로켈 (Seroquel, Quetiapine)이 비급여 약제로 변경된 점에 대해 탄원드립니다.

파킨슨 증상을 치료하는 약물에 의해 환시, 이상행동이 흔히 나타나는데 이 증상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보호자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증상입니다. 신경과에서는 이 증상을 세로켈을 처방하여 조절했습니다. 담당 선생님은 세로켈은 다른 약과 달리 파킨슨 증상을 악화시키지 않고 환시, 이상행동과 같은 정신 증상을 비교적 안전하게 조절 할 수 있다고 합니다.

이전에는 파킨슨 환자는 산정특례가 적용되어 약값의 10%만을 부담하고 세로켈을 사용해왔으나 작년부턴 비급여 약제로 변경되면서 전액을 환자와 보호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.

파킨슨 환자의 정신증상은 환자와 보호자의 인간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절이 필요하지만 이번 고시변경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받게 되었습니다.

부디 세로켈이 급여 약제로 변경되어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. 파킨슨병과 하루하루 힘겨운 싸움을 치르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인

(인)



세로켈 (Seroquel, Quetiapine)은 파킨슨 환자에서 환시 등 정신증상이 나타날 때 파킨슨 증상을 악화시키지 않고 쓸 수 있는 꼭 필요한 약제입니다.

그러나 2009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여 비급여 약제로 변경되어 환자들이 약제 비용 전액 비용을 내야 합니다.

이 약제의 사용은 많은 문헌에서도 타당성이 인정된 바, 비급여약제가 아닌 급여약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. 이렇게 되면 약값의 10%만 부담하면 됩니다.

이에 대해 정부에 탄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민원을제기해주시시오.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도 탄원해주시기 바랍니다.

민원사항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-115호  
(Quetiapine fumarate 경구제의 비급여 변경)

1. 규제개혁위원회  
<http://www.rrc.go.kr/>  
전화 : 02)2010-2279, 2280 팩스 : 02)2100-2289
2.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 
<http://www.acrc.go.kr/acrc/index.do>
3.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
<http://www.hira.or.kr>